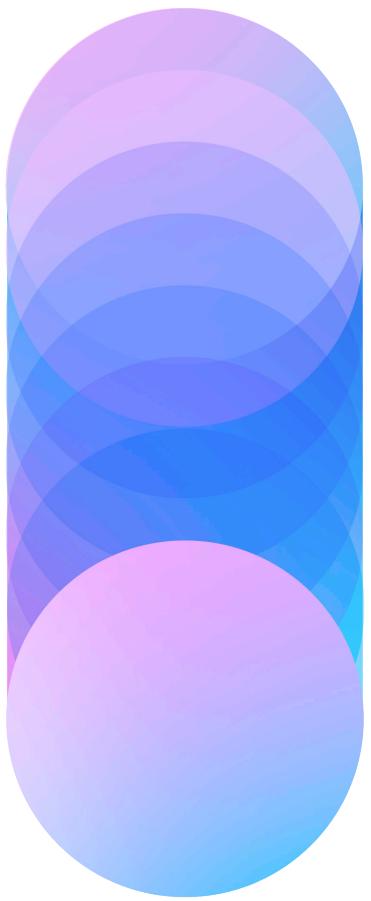


# 전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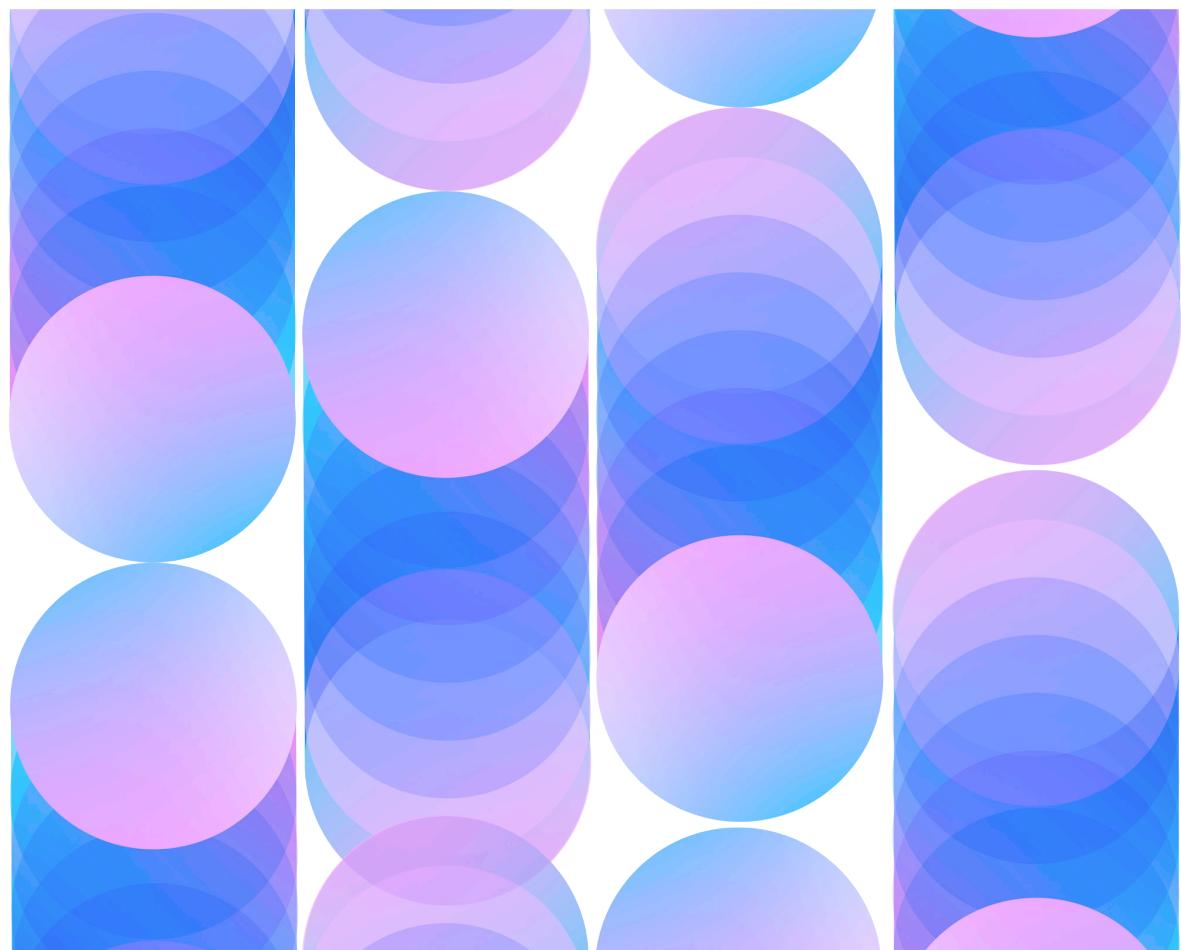
전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 자료집



# 전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 자료집

2022. 8. 26(금), 14:00~17:00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 전국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네트워크 발족준비모임

지원사업 | 사랑의 열매  
사이버차공동모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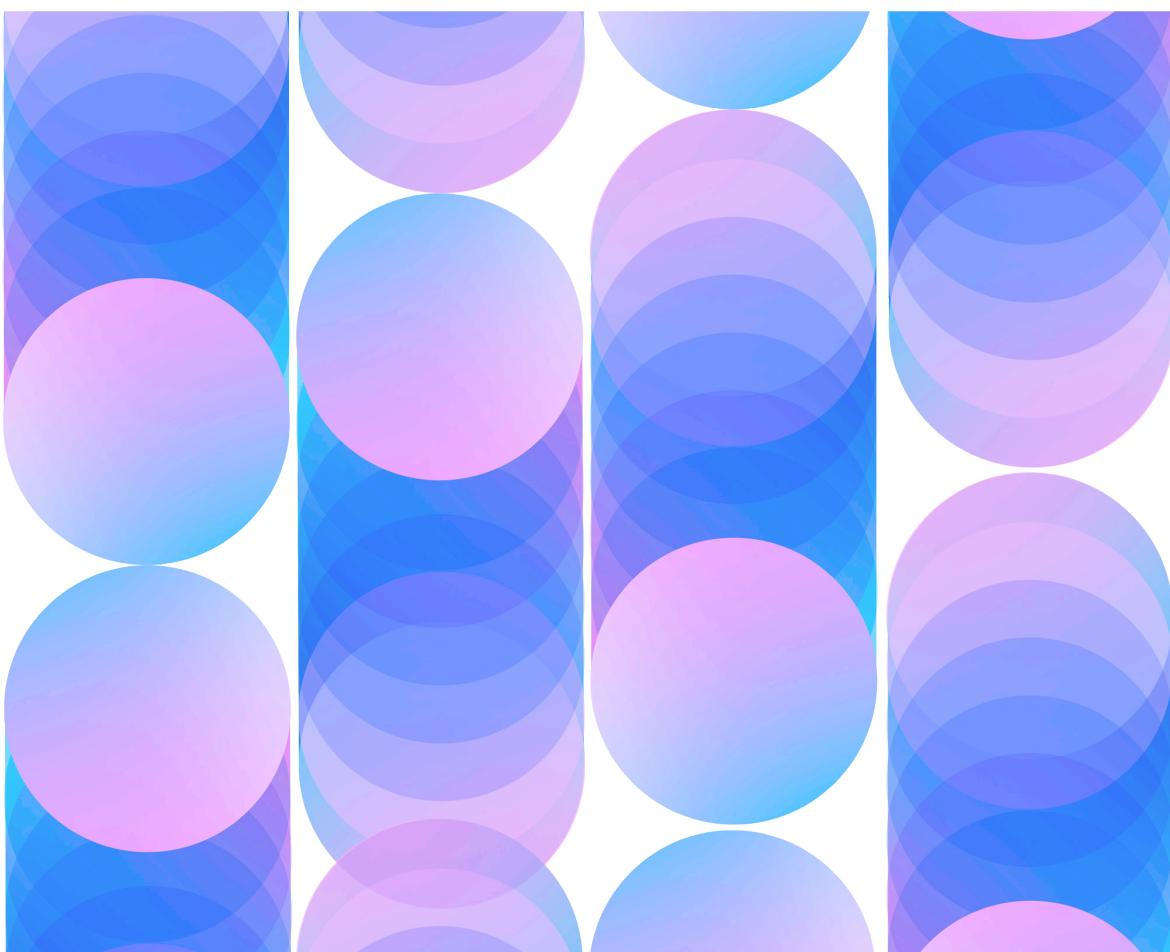




# 전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 자료집

2022. 8. 26(금), 14:00~17:00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 전국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네트워크 발족준비모임

지원사업 |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전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

2022. 8. 26. 금 14:00 - 17:00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부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발족식

2부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의 개선점과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 회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발 제 | 윤수빈 (사)대구여성의전화 상담원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디지털상담팀장

여혜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김지숙 (사)제주YWCA 사무총장

이승혜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토 론 | 김지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채널 유튜브 라이브 진행 예정

신청 및 문의 | 070-7717-9053 / kcsvrc@cyber-lion.com

주최 |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발족준비모임

지원사업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목 차

---

### ::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발족식

---

|                 |     |
|-----------------|-----|
| 발족선언문           | 9p  |
| 네트워크 활동 개요 및 구성 | 11p |

---

### :: 발제문

---

|   |     |
|---|-----|
| 발제1. 윤수빈 (사)대구여성의전화 상담원                 | 13p |
| 발제2. 이은주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디지털상담팀장 | 19p |
| 발제3. 여혜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25p |
| 발제4. 김지숙 (사)제주YWCA 사무총장                 | 31p |
| 발제5. 이승혜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37p |
| 발제6.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47p |

---

---

### :: 토론

---

|       |     |
|-------|-----|
| 자유 토론 | 53p |
|-------|-----|



# 발족선언문

2022년 8월 26일, 우리는 오늘도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폭력을 마주하고 있다.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발달하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누구든 사이버성폭력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각화되는 심각한 피해 실태와 동시에 입법 공백과 정책 부족, 수사 재판 과정의 고질적 문제, 피해지원을 위한 자원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더 많은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전국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단체들이 모여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를 발족하고자 한다.

1990년대의 삐삐에서 시작해 비디오 캠,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정보통신망은 부지런히 발달했지만, 한국 사회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묵인했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이런 건 못 잡아요.’라는 간단한 평계만으로 피해경험자들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는 익명의 다수, 찾을 수 없는 존재, 찾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남을 뿐이었다. 그리고 피해경험자는 쉽게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히고 목소리를 잃었다. 그 때문에 2015년부터 시작된 폐미니즘 리부트 물결의 주요한 메시지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폭로와 해결 요구이기도 했다. 무엇하나 거저 얻은 것 없이 우리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가 점점 보완됐다. 하지만 2021년 대검찰청의 검찰 연감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14,380명으로 2021년 16,866명으로 1년 만에 17% 증가했다. 검찰이 디지털성범죄를 통계로 집계한 2016년 이후 최고 수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미니즘 백래시는 어떠한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백래시도 심각하지만 이를 넘어서 현실 정치에서의 암담함을 목도하고 있다. 여성혐오와 폭력의 실태를 살펴 변화를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반폐미니즘 정서를 이용해 표몰이 장사를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 삼아 당선되었고, 여성 폭력 피해지원단체와 여성 인권 운동단체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대응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청년 성평등 문화사업이 폐미니즘에 경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성평등’ 주제가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다시 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피해지원 체계 강화라는 기본적인 전제의 방향부터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는 보완해나갈 지점이 산적해 있다.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알려진 이후, 여성가족부의 지원 아래 2021년 각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7개소가 생겼으며 2022년도에는 3개소가 늘어나 총 10개의 특화상담소가 개소하였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늘어나지 않는 예산과 특화상담소 상담원 2명이라는 한계와 피해경험자 의료비 지원이 불가한 조건으로 인해 각 상담소는 피해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특화상담소들은 현재 피해경험자들이 요청하는 온라인상에 퍼진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와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족과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에 각 지역의 특화상담소에서는 삭제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간단한 삭제 시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각 지자체 소속의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이 생겨났지만, 역할과 기능의 구분이나 지원기관 간의 적극적 연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각자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역별, 사업별로 상이한 지원체계와 정책적·자원적 한계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피해경험자가 마주하는 현실이 된다.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변화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사례를 나누며 서로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자신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경험자가 소외되기 쉬운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에 집중한 여성주의 상담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또한, 수사와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피해경험자의 목소리를 담아 전할 것이며 입법적 공백을 명확히 할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이든지 피해경험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국적인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체계 연대를 통해 구축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더 큰 목소리로 어떤 성폭력 피해경험자도 사회에서 부당하게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고 외칠 것이다. 마땅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외칠 것이다. 평등과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투쟁, 오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2022. 08. 26.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 네트워크 활동 개요 및 구성

## 1. 활동 개요

### ○ 목표

- 사이버성폭력 대응의 전국적 연대를 구축
- 전국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의 사이버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사이버 성폭력 피해지원 연계를 강화
- 전국 단위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구상하고 제시

### ○ 내용

- 각 상담소의 피해지원 사례 나눔
- 사이버성폭력 관련 정책 제언
- 피해지원 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 논의
- 사이버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연대적 대응

### ○ 형태

- 참여단체가 모두 집행단체가 되며 사무국이 지정된 형태의 네트워크

### ○ 기준

- 여성주의 관점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사명을 가진 단체
- 현재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단체
- 소수자를 배제, 차별하지 않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인가된 단체 혹은 법인

## 2. 초기 구성

### ○ 준비모임 결성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제안으로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제주 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총 6개 단체가 함께하는 준비모임이 진행

### ○ 준비모임 활동

- 기간: 2022년 6월~8월
- 내용: 네트워크 초기 구상, 네트워크의 활동 목표와 활동 내용 논의, 네트워크 참여 제안 진행, 발족식 및 토론회 준비 등

## 3. 참여단체 (2022.08.26. 기준)

|                        |                 |                 |
|------------------------|-----------------|-----------------|
| (사)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 꿈터성폭력상담소        | 전주성폭력상담소        |
| (사)충남성폭력상담소            | 대구여성의전화         | 제주YWCA          |
|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대전여민회           | 천안여성의전화         |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 성남여성의전화         |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 경남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 수원여성의전화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 광주여성민우회                | 집대여성인권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 한국여성의전화         |

#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의 한계와 개선 방향**

## **발제 1**

**윤수빈 (사)대구여성의전화 상담원**





(사)대구여성의전화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사업인 디지털성폭력특화상담소를 운영하며 대구 지역에서 피해경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경험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과 고충을 알리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려 합니다.

## 1.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을 촉구한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을 때 지역별 각 일선 경찰서는 기준에 따라 사건을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정하기도 하고 사이버수사팀에 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은 매우 다층적인 폭력 피해가 중첩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련된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은 그 특성상 범행 장소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 사건을 관할 경찰서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용기 내어 신고를 결심한 피해경험자들은 관할 부서 혹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 앞에 신고 의지가 꺼여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운 좋게도 피해자가 부서 및 관할 경찰서를 잘 찾은 경우라 해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해외 서버라 수사가 어렵다,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때문에 수사가 어려워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다. 등등 범죄의 심각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수사 편의를 더 중시하는 수사관의 태도 때문에 피해경험자는 신고도 전에 좌절을 수십 번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는 수사관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내 통일된 체계 미비와 각 수사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 대상 관련 교육 확대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을 촉구합니다.

## 2. 사법부의 온정적 태도를 규탄하고 엄중 처벌로 디지털 성폭력 근절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법부는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는 그간 지적해왔던 대로 그 피해가 막심함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디지털 성폭력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보다 피해의 정도가 낮다는 인식이 사법부 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련된 법안이 있음에도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하는 사법부는 사안들을 다시 보고 제대로 처벌하여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이룰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3. 피해경험자의 구체적이지 않은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은 그 피해의 규모 확장이 현 시스템 통제 밖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경험자의 통제와 인지 범위 밖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불안이 항상 동반됩니다. 디지털 성폭력 상황 혹은 그 위험을 인지하였지만 어디서 언제부터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혹은 유포가 되지는 않았을지 등 피해경험자가 피해의 규모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 좋게 신고하여도 과학수사의 기술적 한계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피해경험자 스스로 꿉아 먹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경험자의 구체적이지 않은 불안 역시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일된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 **4. 1년 단위 프로젝트 사업의 불안정성 극복 후 기술적·물적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만연하고 해를 거듭하여 증가하며 그 수법은 교묘해지며 확산하는데 정작 피해경험자의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지역 특화상담소는 1년 단위로 존폐를 걱정하여야 합니다. 비단 존폐의 걱정뿐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사업의 한계로 기술적·물적 지원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경험자 대상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고 보안시스템 및 관련 교육 부재로 삭제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일된 전산 시스템 역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력이탈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피해경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5. 디지털 성폭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촘촘한 법안 제·개정 필요하다.**

현재의 법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촬영물 중심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지원 체계도 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폭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디지털 성폭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법안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의 범위는 법을 기준으로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언제나 법망 밖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촘촘히 마련해 놓아야 그나마 폭력이 처벌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5-1. 촬영에 대한 정의 미흡**

촬영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저장을 기준으로 하기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에 미흡합니다. 촬영 기기 내에 저장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체포하는 경우 외에는 범행 미수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5-2. 촬영 이외의 디지털 성폭력**

성관계 등의 상황을 몰래 녹음하고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성적 촬영물을 동반하지 않고 피해 경험자를 사칭하여 사이버 공간에 성적 모욕을 게시해 놓는 행위, 피해경험자들의 신상정보를 판매하고 구입한 자들이 피해경험자에게 각종 성착취 영상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매우 심각하고 술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촬영물을 동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제대로 처벌할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5-3. 동의 여부의 폭넓은 해석 필요**

삭제를 전제로 상호 간 합의 하에 촬영한 뒤 삭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소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등을 빌미로 상대에게 촬영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피해경험자는 자신이 촬영되는 폭력에 자주 노출되다가 끝내 자포자기 상태로 촬영에 응하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경험자가 촬영에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성인 대상으로 촬영을 강요한 행위 역시 처벌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성폭력; 경계의 폭력과 수사기관의 한계**

## **발제 2**

**이은주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디지털상담팀장**



## 1. 피해지원과정에서의 고충

### (1)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확보의 어려움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빠른 수사 진행이 필요하며 증거물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핸드폰 및 PC, 연동된 앱 등과 관련한 신속한 확인 및 압수수색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임의제출 요구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에 대한 부담 느끼고 있음. 피의자 역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에 어려움 있음.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필수 절차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동의한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시나 삭제 명령의 부재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 소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촬영 당시 피해자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영구히 소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간주하기 어려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한다면 소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재판 종결까지 시일이 걸리고 그사이 피의자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어 피해자는 유포 불안에 시달리게 됨.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함.

### (3) 경찰 수사가 원스톱으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는 유포 전\_여성·청소년과 유포 후\_사이버수사과에서 하고 있음. 경찰의 수사가 범죄 유형에 따라 팀별로 나뉘는 것은 피해자가 유포 협박, 유포, 스토킹, 강간과 같은 중복 피해자일 경우 유포는 사이버수사팀에서 유포 협박, 스토킹, 강간은 여성청소년팀에서 나뉘어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하나의 사건이고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 팀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씩 진술하게 되는 경우 발생함. 국선변호인 역시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각각 2명이 선임되는 등 행정의 낭비와 공백이 발생됨. 경찰 수사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함.

#### (4) 경찰 대상 인식개선 교육 필요

10대 피해자는 특별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피해를 피해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5천원을 입금 받았다고 하여 성매매로 인지하고 사건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례가 발생함. 담당 수사관의 말 한마디는 피해자의 고소 의지를 꺾기도 함.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건 범인 못 잡아요, 이건 해외 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은 진행이 안돼요.”하는 말을 들었음. 이에 대한 시정과 교육이 필요함.

#### (5) 법률의 미비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대상의 성범죄 관련 법적 규제 필요함. 제페토, 로블록스 등 10대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아바타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제재를 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유포나 합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모의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음. 지인능욕과 관련한 합성이나 불법촬영물 판매 및 유포 관련한 계정홍보가 이어지는 중. 방심위에 유해물로 신고했으나 방심위 역시 신고·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받음. 예방적 차원과 선언적 의미에서 디지털성범죄 모의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필요.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버스에서 자위하는 영상을 올리는 계정을 발견함. 계정 이름은 초딩변X. 가해자는 초등학생이 아닌 교복을 입고 있는 중학생으로 보였음. 음란물로 해당 플랫폼에 신고. 그러나 계정이 삭제되지 않았고 다음 영상으로 버스 안에 앉아계신 할머니에게 자기 성기를 비비는 영상을 올림. 상담소에서 직접 고발했으나 해당 법률을 찾기가 모호.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행이 될 수 없었으며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처벌도 미약하지만 결국 트위터에서 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 수사 종결됨. 이러한 경계의 폭력들에 대한 법률이 미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2. 현 지원 체계의 문제점

### (1) 특화상담소 사업의 불안정성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법적 체계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상담원이 필요함. 경력 있는 상담 전문가를 고용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나 인건비 책정이 낙락하게 되지 않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매년 재공모해야 하는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역량 있는 인력이 지원하기 힘들고 이는 서비스 지원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2) 특화상담소 자체적인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

해바라기센터나 다른 상담소와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한 번 더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에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며 연계하는 그러한 결과 연계 도중 연락이 끊기기도 함. 연계를 통해서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각 상담소에 최소한의 의료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운영 600일, 이어갈 고민**

### **발제 3**

**여혜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운영 600일, 이어갈 고민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상담원 여혜지

## ● 피해지원 과정에서의 고충

### 1.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속 상담의 어려움

#### 1)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와 소통

피해자가 처음 상담소에 전화를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계되었을 때, 상담원은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연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초기 상담을 진행했지만,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일도 있다. 특히 피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경우가 그렇다. 다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의심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숨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유포 여부를 떠나 피해 촬영물이 있는 경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디지털성폭력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에 불안과 고통을 주고,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 디지털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숨고 도망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 2) 피해촬영물이 있으나 유포 여부는 모르는 피해자와 소통

피해촬영물 원본을 가지고 있으나 유포는 명확하지 않을 때 피해자들은 삭제지원 요청을 망설인다. 여기에서 삭제지원은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지원을 말하는데, 타인에게 피해촬영물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가 유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포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삭제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피해자를 설득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긴급함을 요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 삭제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였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도 피해자들의 불안에 공감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피해촬영물을

직접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접수받고 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유포불안은 피해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가 느끼는 유포불안에 대해 공감하고 피해자가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도 상담소의 역할일 것이다.

## ● 현 지원체계에서의 문제점

### 1. 고소하기 어려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 1)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극적인 경찰관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녹화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2022년 8월 경찰서에 동행하였다.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은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은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3년<sup>1)</sup>과 2018년<sup>2)</sup> 선고된 판례를 알려주었다. 또한, 가해자 특성이 되지 않았고, 해외 SNS는 협조적이지 않아 가해자를 잡을 수 없다며 ‘수사에 실익이 없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1항은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사건에 대해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전에 문의했을 때 다른 경찰관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일부 수사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경찰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용기 내어 고소했을 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수사는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도 있다. 해외 SNS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수사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에게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와 연계가 필요하다.

#### 2) 보호자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운 미성년 피해자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친구들에게 소문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상담소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는 등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1) 2013.6.27. 대법원 2013도4279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처벌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2) 2018.8.30. 대법원 2017도344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항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력한다. 문제는 가해자가 잡힌 후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게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폭력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건이 알려질 것이 두려운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더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해에 대해 바로 신고하고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일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2. 수사에 비협조적인 대법원 판례

현재 모니터링 진행 중인 디지털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2016도348<sup>3)</sup> 판례를 근거로 추가로 기소된 건에 대해 위법 수집된 증거임을 주장하고 있다. 공판 자료에는 영장을 신청한 기록이 없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관이 가해자가 임의 제출한 핸드폰을 수사하던 중 다른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영장 신청을 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영장이 반려되었던 것이다. 추후 경찰관은 다른 증거에 대해 다시 가해자에게 임의제출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피고인 측은 영장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원할 때는 이미 증거가 사라진 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중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면 장애물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앞으로의 정책과제 제시

### 1. 증거확보를 위한 사건 지원 예산 마련

피해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피해촬영물 원본이 없는 경우 삭제지원은 난항을 겪는다. 피해자가 SNS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였을 때, 혹은 가해자나 가해자의 조

3) 2021.11.18. 대법원 2016도348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위하여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께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

력자가 SNS 계정 탈퇴를 종용하고 자신들이 만들어준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해자는 추적이 어려운 SNS(라인, 텔레그램 등)를 이용하며, 채팅을 바로 삭제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채팅, 기기에 저장되었던 사진 등은 삭제되어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가해자의 핸드폰이 아닌 피해자의 핸드폰을 복구하여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 피해촬영물 원본이 없을 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다면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할 수 있으며, 포렌식 진행이 어렵거나 긴급할 때는 사진복구 어플을 안내하기도 한다.

디지털포렌식<sup>4)</sup>은 경찰 외에도 다양한 전문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고소 혹은 신고를 하고 추후 절차도 까다로운 경찰에 비해 조건이 거의 없는 사설 업체는 피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된 핸드폰을 맡기기에는 보안이 걱정되고 비용도 발생하므로 안전이 검증된 업체가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가 지역 내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보안이 철저한 업체와 협약을 맺고 피해자를 지원한다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의 운영비 및 사업비 사용 가능 범위에 디지털포렌식, 녹취록 인증 등의 증거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가 안전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2.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인력 충원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2명의 인력으로 상담·사건 지원부터 캠페인, 예방 교육, 간담회 등 외부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부터 디지털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 연대를 위한 간담회,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까지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의 역할<sup>5)</sup>을 생각한다면 상담원이 피해자지원에 집중하고 상담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4)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네이버 어학사전]

5)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불법영상물 모니터링과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처방안**

## **발제 4**

**김지숙 (사)제주YWCA 사무총장**



2022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는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SNS, 메타버스 등등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 방법들도 다양하게 발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악영향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는 점차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술의 진보가 사회의 발전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폭력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으며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성을 가진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성폭력의 피해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차 가해 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영상 및 사진이 유포되는 시간은 24시간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수사 지원, 법률 마련,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증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한계점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기에 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해당 지자체, 민간이 서로 노력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양산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피해자 지원의 한계

### 가. 삭제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상담소는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삭제지원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는 온라인상으로 퍼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은 당장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평생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촬영물이 일단 유포된 이상 인터넷 상에서의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5년 뒤, 10년 뒤에 재유포할 경우도 있고, 원본 게시물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면 접속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IP를 우회시켜 어디서든 재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물, 사진에 대한 삭제지원은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삭제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닌다는 생각에 평생을 쫓기면서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트라우마는 자신이 직접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촬영물이 다시 올라오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어려움으로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 나. 디지털성범죄 처벌의 한계

최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자료」를 증거로 삼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반포 등)까지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 장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그와 연동되어있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 1452 판결)

[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고 있었다.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 시간을 주자 A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고 저장된 파일 중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켜 로그인 상태였던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앞서 말한 압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증거확보 및 대처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법률적, 정책적 접근도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원이 절실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누구나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로 인해 매우 엄중하고 막대한 법의 대가가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에 피해자들은 또 힘없이 무너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 다. 디지털성범죄의 교육

디지털성범죄상담소는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로부터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인 영상물, 사진 등의 유포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지원을 돋고자 지역에 개소된 상담소이다.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상담소의 주된 역할은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이 주된 역할이었으나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는 초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당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한 방법으로 “받은 영상이나 문자를 바로 삭제했다.” 1위, “카톡방이나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2위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렸다.” 3위 순위로 나타났고,

성범죄 피해를 입은 당시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1위 “당시에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2위 “어떠한 대처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3위 순으로 나타났다.

위 설문 결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예방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과 디지털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덜 확립된 청소년기에 디지털성범죄의 노출이 더 많아진 만큼 학부모 및 학교, 청소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내의 예산에는 교육비가 별도로 측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사업 및 자체 사업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담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으면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또한 지원되지 않아 타 상담 기관을 연계해야 하는 점에서 상담소 운영에 대한 한계점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지역적으로 디지털 특화상담소가 각 지방에 있다는 점만 보여주기 식이지, 상담소 내부적으로 효과적인 대처 및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은 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지역 상담소들의 상담 사례 및 고충을 나누며,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를 기대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재 부족한 지원들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으로부터의 회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의 문제**

## **발제 5**

**이승혜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의 문제

## 1. 문제 제기의 배경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에게 알리고 지지와 지원을 받아 권리 구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음.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반응을 우려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특히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이 친절함을 가장하여 그루밍 기간 동안 체계적 둔감화 과정을 통해 작은 요구에서부터 성적인 요구와 협박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마치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가담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여 자책감이 큰 특징이 있음(전수아 외, 2021:122). 이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고 법정대리인의 반응, 2차 피해 등을 우려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구제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고 안내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여 신고와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신고는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일 뿐 아니라 범죄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신고 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경찰의 이야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여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지님.

행정적 편의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수사관도 있으며, 특히 보호자 고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동, 청소년의 사건을 접수하면 법적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여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46p).

-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담당자의 재량으로 법정대리인 고지 및 동의 없이 신고가 이루어지기는 사례가 드물게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신변 및 법정대리인의 민원 발생 시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담당자들은 방어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임.

- 2020년까지는 피해지원 시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기는 했으나, 특히 수도권에서는 보호자 통지 문제로 신고가 어려운 사례가 부각 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2021년 1월 범죄수사규칙 개정 후 이러한 문제가 부각 되고 있음.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구제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함.

##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례(실제 사례에 근거해 각색함)

### 1. [A] 2020년, 18세, 유포 협박 피해

- 2020년, SNS 1:1 대화방으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소개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정보 및 사진 등을 여러 SNS, 불법 포르노 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여러 시간 협박함.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피해자 지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압박함. 자기소개 영상을 보내자 또 나체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함. 응하지 않자 연락 오지 않음.
- 보름 후. 같은 SNS로 모르는 사람이 이전에 협박했던 사람이 자신의 지인이라고 하며 다시 협박 지속함. 협박받는 중에 성폭력상담소 상담원과 함께 신고하려 경찰서 방문함.
- 여성 청소년계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보호자 통지는 필수라고 함. 긴 시간 신고가 지체되어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고 돌아감. 다음날 상담소의 요청으로 당시 범죄수사규칙 중 아래의 제211조(2021년 1월 8일 범죄수사규칙 개정되며 현재는 삭제됨)을 근거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장 재량으로 보호자 통보 없이 신고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협박받는 중에도 신고가 지체되었음.

2020년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등) ①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B] 2022년, 17세, 유포 협박 피해

- 일탈계 계정 운영 17세, 유포 협박으로 인해 긴급 신고 원함.
- 과거에 피해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 시 보호자 고지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함.
-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하여, 상담소에서 설득하였으나 연락 중단됨.

### 3. [C] 2020년, 19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유포 협박 피해

- SNS 활동 중 가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가해자는 비슷한 심리적 취약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어필하여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함.
- 이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유포 협박 피해로 본 성폭력상담소 연계됨.
-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였으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우며, 신고 시 보호자 통지의 사실을 인지하고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신고를 포기함.

## 3.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 피해자 지원과정에서도 보호자에 의한 2차 가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가 심리적 준비 없이 또는 상담원의 개입, 중재 없이 이러한 보호자의 2차 가해에 노출되었을 때 아동·청소년은 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되거나 심리적 피해 후유증이 심화 될 수 있음.

#### 2차 가해 사례(실제 사례에 근거해 각색함)

- ◆ 사례(A) 부모님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지함. 이후 가해자 특정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가 잘했으면 다 해결됐을 텐데, 네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고 발언하여 의도하지 않았지만 2차 가해를 함
- ◆ 사례(B) 부모님이 피해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네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긴거다’라는 발언을 하여 내담자에게 상처를 줌
- ◆ 사례(C) 강간 피해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혼자 신고함. 이후 부모님에게 말하니 부가 피해자에게 신체 폭력을 함. 이후 가출함

- 상담원과 법률대리인도 보호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부모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 실제 지원과정 중에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알려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음.

- 신고과정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포기하게 되면 피해자는 필요 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나아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자신에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고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음. 그렇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더욱 대담하게 다음 범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신고와 처벌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보호자 통지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다면 이는 피해자 회복과 치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문제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며 헌법 상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4. 신고 시 보호자 통지 관련 규칙 검토**

-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아래 표 참조)’ 제11조 ④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1. 고소인 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 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 시 보호자 통지에 대해 1.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4.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범죄수사규칙(아래 표1 참조)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청 훈령으로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행정안전부령보다 하위에 있음. 상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

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 신고 시 보호자 통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결국, 경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이 잘못되면 수사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명감을 지니지 않은 한, 규정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48p).

<표 1>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수사규칙 비교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br>[시행 2020. 9. 10.] [경찰청훈령 제980호, 2020. 9. 10., 일부개정]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br>[시행 2021. 1. 8.] [경찰청훈령 제1001호, 2021. 1. 8., 타법개정] - 현행규칙과 동일   | (행정안전부) 경찰수사규칙<br>[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2020. 12. 31., 제정]   |
|---|---|--|
| <p>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소년법」에 따른 “비행소년”을 포함한다)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는 때,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보복법</p> | <p>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p> <p>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p> | <p>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p> <p>(중략)</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p> <p>③ (생략)</p> <p>④ <u>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u></p> |

|   |  |
|---|--|
| <p><u>죄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⑤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p> | <p><u>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u></li> <li><u>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u></li> <li><u>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u></li> <li><u>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u></li> </ol> |
|---|--|

<표 2> 신고 및 수사 시 보호자 통지 현황(경찰서) - 2021년 10월 본상담소 전화 조사 결과로 공식적인 조사는 아님

| 지역                         | N | 보호자<br>통지 필수 | 상담소,<br>변호사 동행 | 기타 의견  |
|----------------------------|---|--------------|----------------|--|
| 17개 시·도<br>경찰서<br>*48기관 조사 | 8 | 38           | 8              | <p><b>보호자 통지 원칙</b></p> <p>예외) 변호사 동행 시 수사 진행하기도 함<br/>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지하지 않음<br/>본인 의사가 명확할 경우, 상담원 동행 수사 가능<br/>112신고부터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강조해야 가능<br/>사안에 따라 검토 가능하나 13세 미만은 무조건 고지</p> |

- 원칙적으로 보호자 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하지만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양육자와의 관계, 가정상황, 관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함. 위와 같은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로 상담원, 변호사, 수사관 등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5. 해외 입법 사례

- 영미권 국가는 18세 미만이지만 충분히 성숙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청소년 (sufficiently mature and capable of making their own decision)을 ‘Mature Minor’로 구분하여 의료 행위와 형사절차에서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호주 주 정부의 경우 성착취가 존재했다는 합리적인 확신(reasonable belief)을 가지게 된 전문가는 절차 진행 방식과 보호자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하여 Mature Minor와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sup>1)</sup>
  - 아동이 ‘Mature Minor’라는 평가는 아동의 나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경험, 정서적 성숙도, 지적 능력에 기초한다. 결과적으로, 보건 종사자는 사례별, 건강 사건별로 각 아동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sup>2)</sup>

- 오스트리아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 법률적 조력인 제도를 두고 있음.
  - ‘심리사회적 조력’ 이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절차에 따르는 당혹감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문에 따른 정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하고, ‘법률적 조력’ 이란 변호인을 통한 법률적 조언과 절차의 대리를 말한다.
  -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보호시설 등 관련 공인시설과 계약하여 절차 조력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당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조력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과 상담, 적절한 사회복지제도 지원에 초점을 맞춤.<sup>3)</sup>

## 6. 제언

-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대리인 통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 개정이 시급함.
  -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은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지만 예외적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를 명시하여 권리 구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함.
- 〈 추가 제언 〉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신고 시 가해행위 제재의 즉시성 및 처벌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함. 처벌 받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신고 중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권리 보장을 위해 신고까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 신고접수는 하되, 보호자 통지 연기 및 수사 개시에 대한 건은 논의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
  -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예방, 동일한 가해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 신고접수 시 가해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고 사실 확인, 타 사건에서의 활용 가능,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1)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Guidelines for the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sexual abuse when the child is a mature minor,  
<https://ww2.health.wa.gov.au/%7E/media/Corporate/general%20documents/Child%20protection/PDF/InfoSheet07b-Guidelines-reporting-child-sexual-abuse-mature-minor.ashx>(최종방문 2021. 1. 26.).

2)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Infomation Sheet 7 – The mature miner, consensual sex and child sexual abuse

3) 황종근 (2011). 오스트리아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pp. 68-69.



#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

## **발제 6**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이 발제문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피해지원을 시작한지 6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활동가들의 고민과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를 지원하는 일은 2017년 이전에는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들이 기존의 범죄피해자지원체계와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 활용하며 여러 고민을 하며 고군분투해왔다. 2017년 이후부터는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삭제지원을 국가가 해야한다-는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시민들의 문제제기로 본격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중앙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17.9.26.)을 내놓음과 더불어 2018년 4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21년부터는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소로 출발해 2022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경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sup>1)</sup>을 시작한 아래로 매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사업을 이어왔으며 이후 2021년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2022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 자체 차원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들이 개소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작동과 더불어 사이버성폭력 혹은 디지털성폭력에 집중한 피해지원체계의 변화가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들은 이런 지원 체계에서 미끄러지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그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1.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에서 더욱 드러나는 자원의 한계

기존의 성폭력 피해지원체계에서의 자원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더욱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

1) 2017년 10월 31일~12월 31일 두 달 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총괄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사이버활동단으로 참여해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접근

- 성폭력 피해로 인한 물리적인 상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좁게 인정되어 온 맥락이 있고, 물리적 상해가 없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경우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안에서 생계비 지원금 등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거나 지원을 받을 수조차 없는 문제가 있었다.

### 2) 피해의 규모

-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상 가해자가 다수일 수 있고,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기금은 인당 500만원 한도로 너무 적게 산정되어 있다.

### 3) 피해의 기간

-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최초 사건 발생 이후 계속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언제라도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지속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상 사건 발생 이후 2년 이상은 의사 소견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원 기간은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의 정도가 축소되어 가늠되고, 피해의 규모와 기간이 넓고 길 수 있다는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과’를 보여주기에 방해가 된다. 한사성이 오랜 기간 지원한 피해경험자들의 경우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을 ‘국가의 한정된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금이나 의료비 지원금의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다른 피해경험자의 뜻을 빼앗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죄책감과 다른 피해 경험자에 대한 미안함을 피해지원 활동가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오랜 기간 상담이 종결되지 않거나 종결되었던 상담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다른 피해경험자가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존재’로 여겨져 활동가에게도 미안함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다. 피해 경험자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데에는 애초에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지원을 너무 적은 자원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있고,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편성해야 한다.

## 2. 삭제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 안에서의 한계

한편 삭제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 적은 자원을 투입해 ‘성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원이다.

1) 국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고작 몇십명의 계약직 삭제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투입하며 피해경험자의 명수와 삭제지원 건수를 홍보하며 마치 이 폭력에 대한 대응

을 국가가 대단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2) 중앙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뿐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센터들도 삭제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내건다. 지자체의 지원센터들은 삭제지원을 하고자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초기 세팅을 위해 노력하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9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공공DB를 활용하여 필터링을 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2017년~2020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진행하던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유포현장을 찾아다니는 류의 접근이 최선일 것이다.

3)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디지털성폭력 지역 특화상담소 사업 내용 안에는 삭제지원이 역시나 들어가 있지만 예산 부족과 보안상의 문제로 각 지역의 특화상담소에서는 삭제와 모니터링 진행이 부적절하다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결국 디지털성폭력 지역 특화상담소들은 삭제지원을 포함한 특화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부로부터 가이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고군분투하며 삭제지원은 보류하며 운영하고 있다.

명수와 건수 중심의 성과주의적인 삭제지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서의 여성주의적 삭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피해경험자와는 구조적 시각으로 이 피해를 해석하는 상담을 강화하고 그 구조에 문제제기하는 일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설사 삭제가 다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또 유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피해경험자와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거대한 구조 앞에 나약해지기도 하지만 함께 걸어나갈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삭제지원과 함께 여성주의 상담을 어떤 단위에서 강화하며 연결해나갈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3. 법을 중심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한 규정과 피해지원체계에 따른 한계

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경험자를 지원할 때 고소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거나 불기소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특히 가해자가 신원 불상인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서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지원은 중단된다. 이 범죄 피해지원체계가 범죄자, 가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체계인 것이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극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법을 중심으로 하는 성폭력의 규정과 피해지원체계에서 가장 외면받기 쉬운 것이 불안피해<sup>2)</sup>이다. 가해행위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해결 과정에

---

2) 쟁영이나 유포가 되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쟁영이나 유포가 발생했을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를 말한다.

서 다루어지기 어렵다. 한사성은 상담통계<sup>3)</sup>에서 불안피해의 경우 가해자-피해자관계를 ‘가해자 없음’으로 두는데 이러한 개념의 피해는 현행법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 해결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불안피해는 법으로 다루기 힘든 영역이지만 우리의 문제제기는 국가가 법으로 다루기 힘들다고 하여 대응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재판과정에서 불안피해의 상황에서 그것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고민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sup>4)</sup>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을 피해경험자와 상담자가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과 토대가 필요하다.

## 4. 나가며

한국 사회는 지금 사이버성폭력 지원에 있어서 마치 공백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서울시가 변형카메라를 탐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연간 몇 건의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는, 디지털성폭력 특화상담소를 만들었다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경찰청이 소지죄로 몇 명을 검거했다는, 결국 가해자가 최대 몇년형을 받았는 기사들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는 몇몇 피해경험자는 그런데 왜 내 사건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는지, 왜 내 피해촬영물은 계속 유포가 되는지, 왜 나는 지원금이 적게 나왔는지, 왜 나는 지원 체계 안에서 혼란스러운지 의아함과 속상함을 나눠주기도 한다.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을 때 피해경험자는 그 괴리 속에 더욱 괴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우리가 이렇게 잘 했다는 성과주의가 아니라, 삭제업체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에 그치는 기술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피해현장과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가는 피해경험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빈자리에 대응해나가는 여성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전국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네트워크를 통해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술과 법, 심리상담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주의의 언어로 사이버성폭력을 해석하고 이전에 없던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상상해나가며 구조에 문제 제기하여 진짜 피해경험자에게 가닿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초석이 될 것이다.

3) 2021년 상담통계에서는 불안피해의 면면을 다시 살핀 뒤 ‘가해자 없음’으로 정돈했다. 불안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다. 불법촬영이나 유포가 실재하지 않는데도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는 사회가 여성을, 그리고 여성의 성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와 연결된다. 여성의 성적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일어난 위협, 사이버성폭력의 만연함을 규율하기에 역부족인 법과 제도,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여성혐오가 불안피해를 만든다. (2021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통계, p.5)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공공DB 안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의 촬영물 원본이 있어야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하다.

# 자유토론





# 메모장 (MEMO)

# 메모장 (MEMO)

# 메모장 (MEMO)

# 메모장 (MEMO)